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공동체 정책과	01
○ 사회적경제과	33
○ 청년정책과	47

공동체정책과

공동체 정책과

1.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05
2.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 07
3.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09
4.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11
5. 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청년회장 워크숍 .. 13
6. 집체성년례 및 관례, 겨례 의식행사 15
7.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17
8. 시군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19
9.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21
10. 도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23
11.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25
12. 각종 민관협치 회의 등 참석자 실비 27
13.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29
14. 소통협력공간 조성(성립전) 31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주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충남형 공동체 가치 확산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31,000천원 【 지정액: 45,000천원 + 감: 14,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개최 등 집행사유 감소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정책과 변화 등을 통합 인지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공무원(도 및 시·군) 대상 : 공동체 정책흐름 및 융복합 필요성 등 교육
 - 중간지원조직(도 및 시·군) 대상 : 영역별 공동체 정책 학습 및 조직원 역량강화 교육
 - 공동체 사업에 대한 마을특성 맞춤형 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 역점과제 ⑦ 사회통합을 위한 충남형 공동체 육성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4,000천원(2,000천원×2회)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통합 워크숍(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등) : 5,000천원 - 공동체별 사전 멘토 및 컨설팅 진행 등 : 20,000천원(300천원×2회×1명×30개) - 강사비 교재인쇄비, 다과비 등 : 2,000천원	
총사업비	31,000천원(도비 3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31,000	-	45,000	31,000	△14,000	-	계속
국 비							
도 비	31,000		45,000	31,000	△1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4,984	16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충남 인성교육 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생, 청소년, 일반인 등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58,200천원 【 기정액: 62,700천원 + 감: 4,500천원 】**
 ※ 감액 사유 : 인성교육 사업비 시·군 교부 잔액
- 사 업 량 : 12개 시·군(계룡시, 당진시, 예산군 3개시·군 지원단체 부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공모사업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민간공모
- 사업 내용 : 예, 효, 정직, 배려, 소통 등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세미나, 강연, 현장견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원 근거 : 인성교육법 제11조,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성교육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시·군 공모사업) ○ 2020년 충남 인성교육 지원 시·군별 지원내역								
	시군명	총 사업비	시군명	총 사업비	시군명	총 사업비	시군명	총 사업비	
	총 계				194,000				
	천안시	20,000	서산시	10,000	금산군	6,000	홍성군	50,000	
	공주시	25,000	논산시	6,000	부여군	27,000	예산군	-	
	보령시	9,000	계룡시	-	서천군	15,000	태안군	7,000	
	아산시	13,000	당진시	-	청양군	6,000	/		
총사업비	194,000천원(도비 58,200, 시군비 135,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4,000	-	209,000	194,000	△15,000	-	계속
국 비							
도 비	58,200		62,700	58,200	△4,500		
시군비	135,800		146,300	135,800	△10,5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8,650	56,336	2,314	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통 계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유공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02,600천원 【 기정액: 126,600천원 + 감: 24,000천원 】**
 ※ 감액 사유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비 시·군 교부 잔액
- 사 업 량 : 18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15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2020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지원내역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총 계				205,200				
	천안시	61,100	서산시	15,600	금산군	8,900	홍성군	10,400	
	공주시	10,400	논산시	14,300	부여군	2,600	예산군	6,500	
	보령시	15,600	계룡시	5,200	서천군	11,700	태안군	6,500	
	아산시	13,000	당진시	15,600	청양군	7,800			
총사업비	205,200천원(도비 102,600, 시군비 102,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5,200	-	253,200	205,200	△4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02,600		126,600	102,600	△24,000		
시군비	102,600		126,600	102,600	△24,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2,100	96,114	35,986	7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 위치 : 도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2,000천원 【 기정액: 312,000천원 + 감: 30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대회 취소
- 사 업 량 : 2회(도 전진대회·전국대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사업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 지원 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 : 12,000천원 · {(기념품) 5천원 × 700개} + {(인쇄비) 5천원 × 700부} + {(표창장) 10천원 × 50개} + {(대관료 및 차량비) 4,500천원 × 1회} ○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 : 코로나19로 순연 	
총사업비	12,000천원(도비 1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	312,000	12,000	△300,000	-	계속
국 비							
도 비	12,000		312,000	12,000	△3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8,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청년회장 워크숍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재난구조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온양관광호텔(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59)
- 사업 기간 : 2020. 7 ~ 9. 기간중 1박2일
- 예 산 액 : -천원 【 기정액: 12,500천원 + 감: 12,5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자유총연맹 전국시군구청년회장 워크숍 개최 취소
- 사 업 량 : 1회(36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2020년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개최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 코로나19로 개최 취소	
총사업비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45,200	-	△45,200	-	계속
국 비							
도 비	-	-	12,500	-	△12,500	-	
시군비	-	-	12,500	-	△12,500	-	
기 타	-	-	20,200	-	△20,2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8%, 시군비 28%, 자부담 4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성균관유도회 단체 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청소년들에게 성년례를 통하여 효와 예를 중시하는 문화 조성
- 사업 위치 :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70)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천원 【 기정액: 3,600천원 + 감: 3,6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개최 취소
- 사 업 량 : 4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
- 사업 내용 : 성년례(관례, 계례, 집체성년례) 의식행사
- 지원 근거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 코로나19로 개최 취소	
총사업비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3,600	-	△3,600	-	계속
국 비							
도 비	-	-	3,600	-	△3,6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00	3,6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사회단체 육성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천원 【 기정액: 9,000천원 + 감: 9,000천원 】
 ※ 감액 사유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순연(2020→2021)에 따른 행사 취소
- 사 업 량 : 발대식 개최(1회)
- 사업시행방법 : 자체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범도민 지원협의회 발대식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 지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 2020년 행사 취소(2021년으로 순연)	
총사업비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	-	9,000	-	△9,000		
국 비	-	-	-	-	-		
도 비	-	-	9,000	-	△9,000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시군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2,985천원 【 기정액: 7,020천원 + 감: 4,035천원 】**
 - ※ 감액 사유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정(22명)
- 사 업 량 : 시군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중 월 급여 생활임금 미만인 자(2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월 급여 2,100천원(2020년 생활임금) 미만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50천원 지급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자원봉사센터 1년 이상 비정규직 종사자이면서, 월 급여 2,100천원 (2020년 생활임금) 미만인 자(22명) - 22명 × 50천원 × 4~12개월 = 9,950천원 ※ 개인별 1년 이상 근무 도달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있음	
총사업비	9,950천원(도비 2,985, 시군비 6,96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9,950	-	23,400	9,950	△13,450		
국 비	-	-	-	-	-		
도 비	2,985	-	7,020	2,985	△4,035		
시군비	6,965	-	16,380	6,965	△9,415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읍면동 자원봉사 수요-공급 효율적 관리 등 생활권중심 자원봉사 확산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356,815천원 【 지정액: 369,153천원 + 감: 12,338천원 】**
 ※ 감액 사유 : 자원봉사 거점캠프 감소(150→142, △8개소)
- 사 업 량 : 읍면동 자원봉사 캠프 14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캠프 상담가 실비 보상 : 766,800천원 - 450천원 × 142개소 × 12개월 ○ 거점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 422,582천원 - 250천원 × 142개소 × 12개월 	
총사업비	1,189,382천원(도비 356,815, 시군비 832,56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1,189,382	-	1,230,510	1,189,382	△41,128		계속
국 비	-	-	-	-	-		
도 비	356,815	-	369,153	356,815	△12,338		
시군비	832,567	-	861,357	832,567	△28,790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5,254	615,254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도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600천원 【 지정액: 1,200천원 + 감: 600천원 】**
 ※ 감액 사유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정(1명)
- 사 업 량 : 도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중 월 급여 생활임금 미만인 자(1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월 급여 2,100천원(2020년 생활임금) 미만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50천원 지급
- 지원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p>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p> <p>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이면서, 월 급여 2,100천원 (2020년 생활임금) 미만인 자(1명) - 1명 × 50천원 × 12개월 = 600천원	
총사업비	600천원(도비 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600	-	1,200	600	△600		
국 비	-	-	-	-	-		
도 비	600	-	1,200	600	△600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계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8,000천원 【 기정액: 36,000천원 + 감: 18,00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 및 변경(온라인 진행 등)
- 사업 량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등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치 포럼 2,500천원 × 4회 = 10,000천원 · 민관협치 워크숍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대회 운영 6,000천원 × 1회 = 6,000천원 	
총사업비	18,000천원(도비 1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000	-	36,000	18,000	△1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8,000		36,000	18,000	△1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800	19,8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각종 민관협치 회의 등 참석자 실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계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도정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000천원 【 기정액: 9,000천원 + 감: 8,00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 및 변경(온라인 진행 등)
- 사업 량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각종 민관협치 관련 회의, 교육,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지급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민관협치 관련 회의 등 참석자 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16천원 × 1회 × 25명 = 400천원 ○ 참석자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8천원 × 3회 × 25명 = 600천원 	
총사업비	1,000천원(도비 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	-	9,000	1,000	△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000		9,000	1,000	△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499	1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력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통한 예산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38,500천원 【 지정액: 189,020천원 + 감: 50,52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개최 등 집행사유 감소
- 사 업 량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운영, 설문조사 실시, 예산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138,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운영(사무관리비) : 7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 350천원 × 2회 = 70,000천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교육자료 등 인쇄(사무관리비) : 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 20천원 × 2회 = 4,0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행사운영비) :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개최 1회 × 10,000천원 = 10,000천원 ○ 일반보상비(행사실비보상금) : 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참석자 실비 등 : 4,000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 40,5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위탁 : 40,500천원	
총사업비	138,500천원(도비 13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8,500	-	189,020	138,500	△50,520	-	계속
국 비							
도 비	138,500	-	189,020	138,500	△50,52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3,200	110,464	12,736	8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20. 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윤형필 (행) 3478

소통협력공간 조성(성립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세부사업	소통협력공간 조성
통 계 목	일반운영비(201-01) 연구용역비(207-01) 민간위탁금(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 사업 위치 : 중부농축산물류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사업 기간 : 2020.1.1.~2022.12.31.
- 예 산 액 : **2,000,000천원 【 기정액: 1,400,000천원 + 증: 600,000천원 】**
- ※ 증감 사유 : 2020년도 2회 추경 이후 2020년도 2차분 국비 교부(10월, 600,000천원)
- 사 업 량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사회혁신활동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실험 리빙랩, 홍보,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연구용역, 전문가 컨설팅, 홍보 등) 및 민간위탁(사회혁신센터-혁신활동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연구용역 등), 사회혁신센터(혁신활동지원-민간위탁)
- 사업 내용 : 주민 주도 사회혁신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20.2월),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 2,000,000천원(2020년도 총사업비 기재)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201-01) : 2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 자문회의,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 홍보 콘텐츠(영상 포함) 제작, 아카이빙, 사회혁신 교육 등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연구용역(207-01) : 3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천원 - 지역의제 발굴 연구용역 5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방안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60,000천원 - 사회혁신을 통한 공동체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10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민간위탁(307-05) : 1,4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혁신활동 지원 프로그램(리빙랩, 네트워킹, 홍보 등) 1,250,00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공과금 등) 15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0천원(국비 2,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00	0	1,400,000	2,000,000	600,000	11,000,000	신규
국 비	6,000,000		1,400,000	2,000,000	600,000	4,000,000	국고
도 비	7,000,000				0	7,0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예정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0~2024)	2020.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병철 (행) 3471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7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성립전) 39
3. 자치단체 지역(광역) 특화사업 41
4.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성립전) 43
5.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4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기업(예비,인증)의 자생력 확보 및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 위치 : 충남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3,909,400천원 【 기정액 : 4,789,400천원 + 감 : 880,000천원 】**
-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변경 확정내시
- 사 업 량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남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충남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4,738,67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력 인건비(3,55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명 × 1,382천원 × 12개월 ≒ 3,554,000천원 ○ 전문인력인건비(1,184,67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명 × 2,000천원 × 12개월 ≒ 1,184,670천원 	
총사업비	4,738,670천원(국비 3,554,000 도비 355,400 시군비 829,27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738,670	0	5,805,333	4,738,670	△1,066,663	0	
국 비	3,554,000		4,354,000	3,554,000	△800,000		균특
도 비	355,400		435,400	355,400	△80,000		
시군비	829,270		1,015,933	829,270	△186,663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5%, 도비 7.5%, 시군비 1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34,100	3,334,1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만희 (행) 2280	최길락 (행) 3842	차회정 (행) 397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역특화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 기간 : 2020.3.1.~2020.12.31.
- 예 산 액 : **535,919천원 【 기정액 : 474,000원 + 증 : 61,919천원】**
-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변경 확정내시
- 사 업 량 :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51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모선정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발비, 기술, 홍보비
- 지원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678,384천원 ○ 인증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업당 100,000천원 x 15개소 x 20% = 300,0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업당 50,000천원 x 20개소 x 37.8% = 378,384천원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운영지침 준용 	
총사업비	678,384천원(국비 474,869 도비 61,050 시군비 142,46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78,384		600,000	678,384	78,384		
국 비	474,869		420,000	474,869	54,869		국고
도 비	61,050		54,000	61,050	7,050		
시군비	142,465		126,000	142,465	16,465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0,666	590,664	2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만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회정 (행) 3942

자치단체 지역(광역) 특화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역특화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한 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0.3.1.~2020.12.31.
- 예 산 액 : **187,330천원 【 기정액 : 266,000원 + 감 : 78,670천원】**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변경 확정내시
- 사 업 량 : 지역특화사업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모선정
- 사업시행주체 : 민간대행
- 사업 내용 : 자치단체(광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 및 판로개척
- 지원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단체 지역(광역)특화사업 : 187,330천원 ○ 지역(광역) 특화사업 · 4개소 = 187,330천원	
총사업비	187,330천원(국비 131,131, 도비 56,199)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7,330		266,000	187,330	△78,670		
국 비	131,131		186,000	131,131	△54,869	국고	
도 비	56,199		80,000	56,199	△23,801		
시군비					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000	235,050	14,950	94.0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만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이영은 (행) 228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자부『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됨으로(20.04) 청양군 (구)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사회적 경제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 사업 기간 : 2020. 4. ~ 2022. 12.(계속비 사업)
- 예 산 액 : **1,900,000천원**
- ※ 신규 계상 사유 :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1차 450백만원 성립전예산 편성(예산담당관-12016 (2020.08.25.))
- 사 업 량 : 연면적 12,780.2m², 2동(증축, 리모델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회의자료, 연구·실험, 공용, 지역특화센터 등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1,900,000천원 ○ 설계비 : 1,900,000천원 * 1식 = 1,900,000천원 	
총사업비	1,900,000천원(국비 950,000, 도비 570,000, 부담금 3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000,000	0	0	1,900,000	1,900,000	26,100,000	계속비
국 비	14,000,000			950,000	950,000	13,050,000	균특
도 비	8,400,000			570,000	570,000	7,830,000	
시군비	5,600,000			380,000	380,000	5,220,000	부담금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0%, 부담금(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반영	비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2020년	2020년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만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이영은 (행) 2282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
단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공유단체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공유경제 활동을 선도하고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 【 기정액 : 60,000원 + 감 : 20,000천원】
 - ※ 증감 사유 :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당초 3개소 선정코자 하였으나 2회에 걸쳐 공모·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에 적합한 2개소만 선정·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공모) 2개소
- 사업 내용 :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및 공유단체·기업의 역량강화 및 홍보 등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금 등 지원)

-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40,000천원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공모)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역량강화 및 홍보 등 20,000천원 × 2개소 = 40,000천원	
총사업비	40,000천원(도비 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60,000	40,000	△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40,000		60,000	40,000	△2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만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

1.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51
2. 청년 네트워크 운영	53
3.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56
4.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	58
5.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	60
6.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62
7. 지역사회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64
8.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66
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8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청년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사항 등 심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9,000천원 【 기정액: 18,000천원 + 감: 9,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및 네트워킹 취소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정기·수시회의 6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정기, 수시) 개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청년 네트워킹 등 추진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p>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9,000천원 ○ 회의(정기 2회, 수시 4회) 운영 = 9,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수당 : 100천원 × 13명(위촉직) × 6회 = 7,8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 10천원 × 20부 × 6회 = 1,200천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운영비) : 전액삭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전액삭감 	
총사업비	9,000천원(도비 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00		18,000	9,000	△9,000		
국 비							
도 비	9,000		18,000	9,00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1,655	6,345	6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안연순 (행) 2290	이상의 (행) 3981	노경원 (행) 3991

청년 네트워크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기타보상금(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청년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도정 참여 기회 마련 등 청년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55,800천원 【 기정액: 60,800천원 + 감: 5,000천원 】**
- ※ 감액 사유 : 정책연구활동 포상을 표창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타보상금 삭감
- 사 업 량 : 청년네트워크 185명 구성, 분과별 정책연구 10회,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1회, 네트워크 위원 역량강화(자격과정) 1회 운영, 성과공유 포럼 1회, 워크숍 1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청년네트워크 행사(발대식, 역량강화, 성과공유 포럼, 워크숍) 개최 및 분과위원 전문가 정책연구 및 코칭 지원 등 추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 7. 10.>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운영(사무관리비) : 18,0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활동 : 1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정책연구(회의자료, 사무용품 등) : 10천원 × 15개 시군 × 10회 = 1,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활동 사례집 : 20천원 × 15개 시군 × 10부 = 3,000천원 · 충청남도 청년정책집 : 15천원 × 100명 × 1부 = 1,50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 200천원 × 2명 × 15개 시군 × 2회 = 12,0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자문수당 지급기준 준용(2시간 심사)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운영비) : 33,3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행사(발대식, 역량강화 교육, 성과공유포럼, 워크숍 등) : 33,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임차비 : 900천원 × 4회 = 3,600천원 · 버스 임차비 : 700천원 × 3회 = 2,100천원 · 대형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 185천원 × 4회 = 740천원 · 행사 강사비 : 230천원 × 4명 × 3회 = 2,76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 행사지원 인건비 : 100천원 × 4명 × 4회 = 1,600천원 · 교재 제작비 : 11천원 × 100명 × 3회 = 3,300천원 · 역량강화 교육(자격과정) 시험비 : 44천원 × 100명 = 4,4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2천원 × 100명 × 4회 = 800천원 · 행사시설(음향장비 등) 임차료 :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 행사 스케치 영상촬영 및 제작 : 550천원 × 4회 = 2,200천원 · 수료증 및 자격증 제작비 : 10천원 × 400명 × 1식 = 4,000천원 * 발대식 100명, 역량강화 교육 100명, 성과공유포럼 100명, 워크숍 100명 · 행사기타장비(영화상 카메라 등) 임차료 : 950천원×4회 = 3,8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4,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위원 활동비 4,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교통비 등) : 30천원 × 15개 시군 × 2명 × 5회 = 4,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기타보상금) : 전액삭감 	
총사업비	55,800천원(도비 55,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5,800		60,800	55,800	△5,000		
국 비							
도 비	55,800		60,800	55,800	△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500	19,316	12,184	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 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제의 場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9,000천원 【 지정액: 50,000천원 + 감: 41,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 취소 및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용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개막식, 주재행사, 청년정책 포럼 등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7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9,000천원 ○ 청년의 날 행사(행사운영비) : 9,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인력(지원 등) : 20천원 × 4시간 × 5명 = 400천원 · 사회자 및 축하공연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구조물 설치(대형 LED 등)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콘텐츠 제작비(영상 등)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행사 제작비(대형 현수막 등)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소모품비(다과 등) : 600천원 × 1식 = 600천원 		
	총사업비	9,000천원(도비 9,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00		50,000	9,000	△41,000		
국 비							
도 비	9,000		50,000	9,000	△4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과의 소통·공감채널(대상·주제·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현장감 있는 청년의견 수렴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5,000천원 【 지정액: 25,000천원 + 감: 1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 취소 및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청년 소통공감 간담회 2식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분야별·직능별 청년과의 소통·공감 간담회(정책 토론 및 제안) 개최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2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p>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p> <p>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p> <p>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p> <p>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p> <p>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 15,000천원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지역 청년 등) : 1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지원 인력 : 20천원 × 5시간 × 3명 × 2식 = 600천원 · 사회자 및 축하공연 : 1,000천원 × 2식 = 2,000천원 ·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150천원 × 5명 × 2식 = 1,5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퍼실리테이터, 1시간 교육) · 구조물 설치(음향 등) : 1,500천원 × 2식 = 3,000천원 · 콘텐츠 제작비(영상 등) : 1,500천원 × 2식 = 3,000천원 · 행사 제작비(대형 현수막 등) : 1,000천원 × 2식 = 2,000천원 · 소모품비(티셔츠 등) : 1,450천원 × 2식 = 2,900천원 	
총사업비	15,000천원(도비 15,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25,000	15,000	△10,000		
국 비							
도 비	15,000		25,000	15,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 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전산개발비 (2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지원정책을 온라인 종합포털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인지도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청년 포털 홈페이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2,000천원 【 기정액: 25,000천원 + 감: 3,000천원 】**
- ※ 감액 사유 :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 절감에 따른 감액(청년정책제안 기능 만사형통 충남과 연계)
- 사 업 량 : 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용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청년정책 온라인 홍보 및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매칭을 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 일자리, 청년활동, 복지·문화, 생활안정 등 분야별 종합정보 제공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p>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p> <p>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p> <p>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p> <p>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 2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인건비 :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및 개발 총괄(PM) = 3,700천원 · 사이트 기획 및 디자인 개발(UI/UX) = 2,300천원 · 응용S/W개발 = 10,000천원 · 검수 및 수정보안 = 2,000천원 · 교육 및 운영지원 = 2,000천원 ○ 온라인 플랫폼 기술개발비 : 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비 : 2,000천원×1식 = 2,000천원 	
총사업비	22,000천원(도비 22,000)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000		25,000	22,000	△3,000		
국 비							
도 비	22,000		25,000	22,000	△3,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의 지역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인구 지역정착 및 도내 유입 촉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65,000천원 【 기정액: 180,000천원 + 감: 15,000천원 】**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집합 교육 상 어려움이 있어 1개 사업량 미달으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청년학교 11개소(시군별 1개소), 청년커뮤니티 66팀(시군별 6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민간단체수행)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공모선정)
- 사업 내용 : 현장 중심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동아리)의 실험적 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2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 330,000천원(도비 165,000, 시군비 165,000) ○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 165,000천원(15,000천원 × 11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사료 및 여비지급 : 240천원 × 2명 × 7회 × 11개 시군 = 36,96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교통여비 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제작 : 15천원 × 50명 × 7회 × 11개 시군 = 57,75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4천원 × 50명 × 7회 × 11개 시군 = 15,400천원 · 임차료 : 500천원 × 7회 × 11개 시군 = 38,500천원 · 홍보비 : 213천원 × 7회 × 11개 시군 = 16,400천원 ○ 청년 커뮤니티(동아리) 지원 : 165,000천원(15,000천원 × 11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 6팀 × 500천원 × 11개 시군 = 165,000천원 	
총사업비	330,000천원(도비 165,000, 시군비 16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30,000		360,000	330,000	△30,000		
국 비							
도 비	165,000		180,000	165,000	△15,000		
시군비	165,000		180,000	165,000	△1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	1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지역사회 청년 쉼어하우스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지역 정착 초기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형성 기회 보장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80,000천원 【 기정액: 160,000천원 + 감: 8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쉼어하우스는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개 사업량 미달
- 사 업 량 : 14개소 운영(1개 시군당 7개소*2개 시군 / 1개소당 3명 청년 모집)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기존 건물 임대 후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재 임대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4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 160,000천원 (도비 80,000천원, 시군비 80,000천원) ○ 임대료 : 7,8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109,200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1개소당 임대료 : 650천원 × 12개월 = 7,800천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 1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1,400천원 ○ 집기구입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2,0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28,000천원 ○ 운영비(수선비, 기타 운영비 등) : 1,0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14,000천원 ○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 528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7,400천원 	
총사업비	160,000천원(도비 80,000, 시군비 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		320,000	160,000	△160,000		
국 비							
도 비	80,000		160,000	80,000	△80,000		
시군비	80,000		160,000	80,000	△8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0,000	1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는 2017년 청년일자리팀 신설 이후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그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이 없었으므로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설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속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 운영 방법 개선 등을 모색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대상 수혜자 확대에 고용환경 개선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공모에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구성·운영실적 기재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000천원 【기정액 : 9,000천원 + 감 8,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축소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및 적절성 평가 등

- 지원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호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회의 : 1,000천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회의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책자 인쇄비 등 : 600천원 · 기타 운영비 : 400천원 	
총사업비	1,000천원(도비 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		9,000	1,000	△8,000		
국 비							
도 비	1,000		9,000	1,000	△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5,742	4,258	57.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설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기업·기관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 고용환경 개선코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021년까지 추진 계획
- 예 산 액 : **16,027,018천원** 【기정액 : 16,036,537천원 + 감 9,519천원】
※ 감액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 사 업 량 : 63개 사업(계속사업 51 + 신규사업 12), 1,067명 고용창출
- 사업시행방법 : 사업유형 제시(행안부) → 지자체 자율적 사업설계 → 행안부 공모·심사 → 국비지원 → 사업시행(시군)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 지원비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227,624천원(국비 11,268,195 도비 4,758,823 시군비 4,904,128 기업부담 2,296,478) ○ 15개 시군, 63개 사업, 1,067명 고용창출 : 23,227,62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 : 51개 사업 628명 고용창출 · 신규사업 : 12개 사업, 439명 고용창출 * 천안2, 보령1, 논산1, 당진4, 금산1, 청양1, 홍성1, 예산1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확정 	
총사업비	23,227,624천원(국비 11,268,195, 도비 4,758,823, 시군비 4,904,128, 기타 2,296,478)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1,822,266	18,594,642	23,246,565	23,227,624	△18,941		
국 비	20,183,814	8,915,619	11,268,195	11,268,195	0	국고보조금	
도 비	8,975,279	4,216,456	4,768,342	4,758,823	△9,519		
시군비	9,120,585	4,216,457	4,913,647	4,904,128	△9,519		
기 타	3,542,588	1,246,110	2,296,381	2,296,478	97	기업부담	

* 보조율 : (1유형)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2유형)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3유형) 국비 40%, 도비 25%, 시군비 25%,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432,050	9,432,0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